
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7.

발 의 자 : 김정호 · 박해철 · 신영대
허종식 · 정성호 · 장종태
이수진 · 윤후덕 · 박 정
전재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, 해당 기관의 장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.

다만,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,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즉 현행법상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전체 입양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①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

조건이 모두 필요함.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입양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는 입양인들의 알권리보다 친생부모의 사생활을 우선하는 것으로 입양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규정임. 실제로 해외입양인이 희귀 유전질환이 의심되어 확실한 진단을 받고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친생부모가 응답하지 않아 정보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. 입양인들은 이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합리함을 지적해왔으며, 지난 4월 17일에는 행정법원에 의하여 현행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된 바 있음.

이에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,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,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입양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2항·제3항 및 제33조제4항·제5항 신설 등).
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 단서 중 “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”를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 단서에도”를 “제2항에도”로, “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공개할 수 있다”를 “공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결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법률 제33조(입양정보의 공개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 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<u>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</u> ③ <u>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</u>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<u>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</u>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<u>공개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	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법률 제33조(입양정보의 공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기간 동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u> ③ <u>제2항에도</u>----- ----- -----<u>경우에는</u>----- ----- -----<u>공</u> <u>개하여야 한다.</u>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생부

<u><신 설></u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, 신청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</u>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결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 ⑥ -----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